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보험회사의 지급여력평가는 보험감독기관이 '예상치 못한 손실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급여력평가를 목적으로 회계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감독회계라 정의한다. 반면 재무회계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재무제표라는 회계보고서를 통해 기업 외부에 공표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회계이다. 다시 말해 재무회계는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행하여진다. 따라서 지급여력평가를 위한 감독회계와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재무회계는 그 목적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도 EU의 경우 지급여력평가제도(Solvency II)와 재무회계 작성기준(IFRS 4 Phase I)이 서로 다르며, 미국의 경우에도 지급여력평가를 위한 감독회계 작성기준(SAP; 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s)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재무회계 작성기준(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이 분리되어 있다. 반면, 국내 지급여력평가제도는 지급여력평가 시 재무회계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급여력평가가 재무회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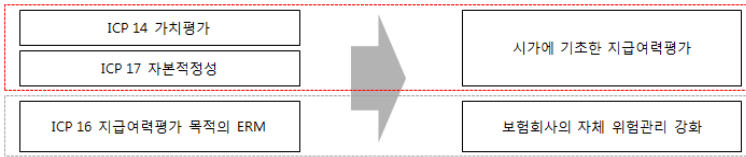
현재 국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평가는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인 RBC 비율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요구자본은 일정기간 동안 일정 신뢰수준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액을 의미하며, 가용자본이란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 시 이를 보전하여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충작용을 하는 자본의 양을 말한다.

이때 국내 지급여력평가제도는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IFRS 4 Phase I 에 기초하여 계산한 재무회계 정보를 이용하여 구한다. 가용자본은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하는 IFRS 4 Phase I 에 기초하여 계산한 재무회계 상 자본에 합산항목과 차감항목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요구자본 또한 재무회계 정보를 이용하여 구하고 있다. 여기서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한다는 것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으로 인한 책임을 평가시점이 아닌 계약당시의 가정(예정위험율,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 등)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 RBC 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
 - 가용자본 = IFRS 4 Phase I 자본 ± 조정
 - 요구자본 = \sum 리스크익스포저* × 위험계수
 - * 리스크익스포저는 재무회계 정보를 이용
-

반면 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는 2011년에 새롭게 제시한 보험핵심준칙(ICP; Insurance Core Principles)을 통해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기초한 지급여력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즉, 보험부채를 계약 당시의 가정이 아닌 평가시점의 가정을 이용하여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그림 I-1 참조). 또한 지난 금융위기 이후 G20이 각국 금융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작업을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을 통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향후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에 관한 국제 기준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지급여력평가제도 또한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기초한 제도로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 -1〉 재무건전성 규제와 관련된 ICP 기준



보험부채 평가방식의 변화는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보험회사의 가용자본은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치를 말한다. 그리고 보험회사 부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험부채이다. 따라서 보험부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보험회사 부채가 변하고, 이는 가용자본을 변화시켜, 결과적으로 RBC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의 전환은 보험부채의 변동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원가평가의 경우 계약당시의 가정을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평가하므로 주어진 평가시점에서의 보험부채가 계약 당시 정해진다. 즉, 평가시점의 환경과 무관하게 보험부채의 크기가 정해진다. 반면 시가평가는 평가시점의 가정을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평가하므로 평가시점의 환경변화가 보험부채의 크기에 영향을 미쳐 보험부채의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변화는 보험회사 재무회계에 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의 등장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보험계약 회계처리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보험회사 및 국가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무제표 이용자가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4;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4)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행된 IFRS 4 Phase I에서 IASB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과 보험부채 원가평가를 우선 인정하되 향후 시가평가에 기초한 Phase II 시행을 위해 보험부채 원가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부채적정성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20년(또는 2021년) 시행 예정인 IFRS 4 Phase II는 현재와 같은 보험부채

원가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더구나 IFRS를 전면 수용(full adoption)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험회사가 IFRS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IFRS 4 Phase II의 보험부채 시가평가는 단순히 국제적 정합성 제고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적용해야만 하는 강행규정이라는 점에서 ICP보다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원가중심 지급여력평가에서 시가중심 지급여력평가로의 이행과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초로 하는 재무회계인 IFRS 4 Phase II의 도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현행 지급여력평가제도와 같이 IFRS 4 Phase II 정보를 이용하여 지급여력을 평가할 경우 국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부채시가평가 정보를 어떻게 지급여력평가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그림 I-2 참조).

〈그림 I-2〉 연구 배경 및 목적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IFRS 4 Phase II, EU Solvency II, 캐나다 MCCR(Minimum Continuing Capital and Surplus Requirement)에서의 보험부채 평가방식을 비교하고, 각 방식을 국내 보험회사에 적용해 봄으로써 국내 지급여력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IFRS 4 Phase II 시가정보와 국내 RBC 규제 연계 방안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조재린 외(2014)는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의 국제적 추세와 RBC 규제 및 부채적정성평가 강화가 국내 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국내 지급여력규제 강화 로드맵으로서 ‘先 부채시가평가 대비와 정성평가 강화, 後 신뢰수준 상향과 같은 정량평가 강화’ 순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오창수 외(2014)는 부채시가평가 시 감독제도 운영방안으로서 재무회계와 감독회계의 일원화/이원화 문제를 제기하고, 재무회계인 IFRS 4 Phase II와 감독회계의 결합 가능한 여러 유형들을 제시하였다. 김해식 외(2015)는 부채시가평가에 기초한 지급여력평가제도 도입의 연착륙방안으로 우선 장래 이익을 장래 결손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고, 점차적으로 장래 이익의 인정 기준을 기본자본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여 보험회사 자본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IFRS 4 Phase II 최초 적용 시 할인율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할인율의 급락 효과를 고려한다면 별도의 감독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3. 연구범위와 방법

본 보고서는 IFRS 4 Phase II, EU Solvency II, 캐나다 MCCR에서의 보험부채 평가방식을 비교하고, 각 방식을 국내 보험회사에 적용해 봄으로써 국내 지급여력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때 부채시가평가에 따른 가용자본의 변화와 그에 따른 RBC 지급여력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시가평가에 따른 요구자본의 변화 등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물론 보험부채 시가평가는 가용자본과 요구자본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가용자본 산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요구자본 산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²⁾ 특히 이미 요구자본 산출 강화 로드맵이 제시되어 단기간에 요구자본 산출 방식이 전면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요구자본 산출에 있어서는 현행 RBC 제도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고 요구자본 산출 강화 로드맵의 영향만 반영하기로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보험회사의 가용자본은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다. 그리고 보험회사 부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험부채이다. 따라서 가용자본의 변화는 지급여력평가 관점에서 보험부채를 어떻게 보는가와 직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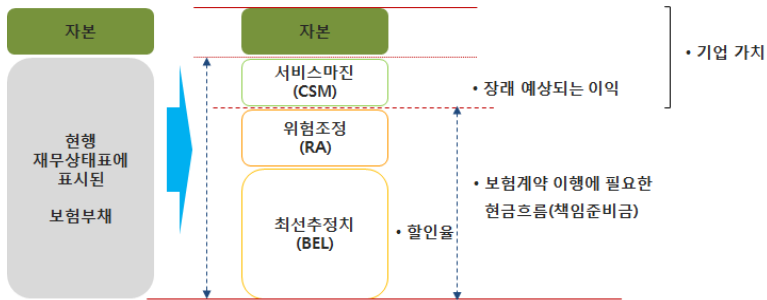
IFRS 4 Phase II 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이행가치(Fulfilment Value)와 장래 예상되는 이익인 계약서비스마진(CSM; 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 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 Risk Adjustment)으로 구분한다(그림 I-3 참조).³⁾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와 위험조정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기대손실뿐만 아니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험조정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응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 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반면, 계약서비스마진은 상품개발부터 보험회사가 예상하고 있는 이익이지만, 손익계산서에 바로 반영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에 비례하여 매기마다 분할하여 반영하게 된다.

2) 현행 RBC 제도는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로 구분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고 있음. 이러한 체계에서 부채시가평가에 기초로 요구자본 산출 시 위험노출(리스크 익스포저)규모를 어떤 값으로 선택하느냐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됨. 예를 들어 보험리스크 익스포저나 금리리스크 익스포저를 IFRS 4 Phase II 상 보험부채금액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산출규칙을 바탕으로 재산출하여 사용할 수도 있음.

3) "An explicit, unbiased and probability-weighted estimate (ie expected value) of the present value of the future cash outflows less the present value of the future cash inflows that will arise as the entity fulfils the insurance contract, including a risk adjustment, (IASB 2013)"의 용어설명 참조.

〈그림 I-3〉 IFRS 4 Phase II에서의 보험부채 시가평가



자료: 김해식(2014).

이렇듯 기존의 보험부채 정보를 최선추정치와 위험조정, 계약서비스마진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게 되면, 정보이용자는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수준을 파악하기가 보다 용이해지고 재무제표에서 순자산은 물론 보유계약에서 기대되는 장래이익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전체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급여력평가 관점의 보험부채로 IFRS 4 Phase II 상의 보험부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그림 I-4 참조).⁴⁾

본 보고서는 이러한 쟁점을 다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II 장에서는 해외 국가 중 시가평가에 기초한 지급여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EU와 캐나다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EU와 캐나다는 각각 Solvency II, MCCR이라는 지급여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U Solvency II와 캐나다 MCCR은 원가평가에 기초한 보험부채를 활용하는 현행 국내 지급여력제도와는 다르게 지급여력평가 시 시가평가에 기초한 보험부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EU Solvency II는 재무회계와 별도로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이용하지만, 캐나다 MCCR은 현행 국내 지급여력평가제도와 비슷하게 재무회계의 부채평가 정보를 큰 조정 없이 이용한다.

4) IFRS 시가정보 활용과 가용자본에 관련된 또 다른 쟁점으로 보험부채 산출가정(할인율 등)에 관한 것이 있음. IFRS 4 Phase II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으로 기본적인 원칙만 제시할 뿐 실무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은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별로 세부기준 선택에 재량권이 존재함. 따라서 지급여력평가 시 부채평가에서 회사 간 보험부채 평가금액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험부채 산출가정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할 수 있음. 본 보고서는 이러한 쟁점사항은 다루지 않기로 함.

제 Ⅲ장에서는 이러한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시가평가정보 활용방식을 구분하고, 각 방식별로 국내 보험회사 RBC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국내 지급여력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림 I -4〉 IFRS 시가정보 활용과 가용자본에 관련된 쟁점

